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21.02. .
우성민	박현규		

카메룬 Limbe 복합화력 발전사업 타당성조사

# 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# 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7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0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1
7. 보안대책.....	12
II. 예정공정표.....	14

# I. 과업지시서

## 1.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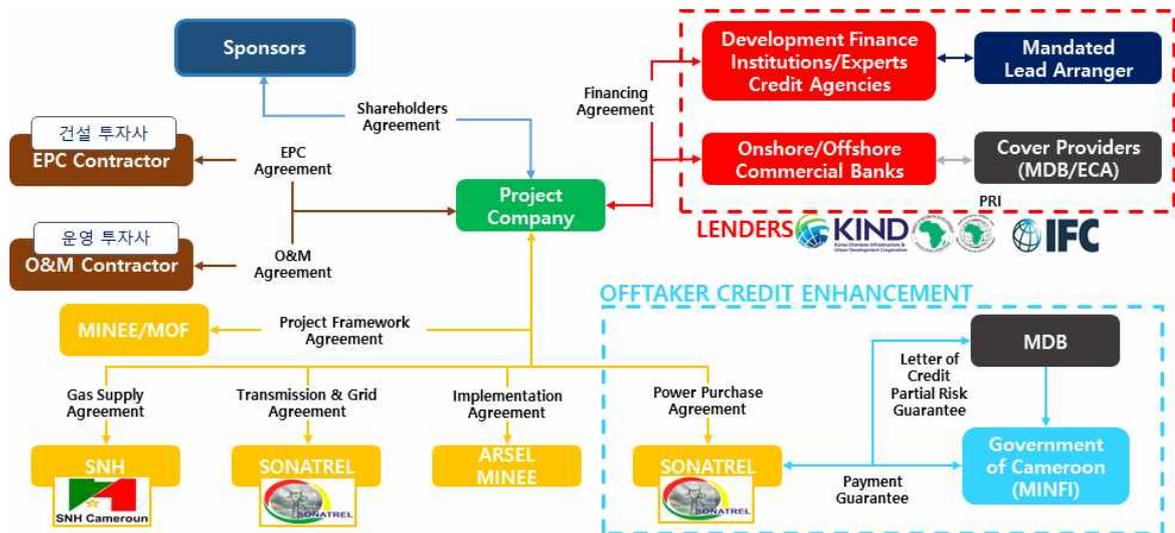
□ 과업명 : 카메룬 Limbe 복합화력 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

### □ 과업목적

- 카메룬 Limbe 복합화력 발전사업은 카메룬 경제수도 두알라 중심에서 직선거리 60km에 위치한 Limbe 지역에 6곳의 후보지중 한곳에 가스복합화력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임
- 카메룬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2035ESDP(Electricity Sector Development Plan)를 발표하고, 동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곳 (Limbe, Fako Division, South West Region)에 가스복합을 개발할 계획임
  - 본 사업은 국제입찰 공고(2020.05.20.) 이후 공식적인 Pre-Qualification (“PQ”)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주 컨소시엄은 공동 PQ 제출 후 (2020.08) PQ 결과 발표 및 사업제안요청서(“RFP”) 발급 대기중
- 이에 따라, 향후 진행될 카메룬 Limbe 지역 350MW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, 법률 및 관련제도, 재무, 세무 및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원활한 사업개발 활용에 그 목적이 있음

□ 프로젝트 개요

- 프로젝트명 : 카메룬 Limbe 복합화력 발전사업
- 용 량 : 총 350MW
- 사업기간 : 건설 약 3년 + 운영20년
- 총사업비 : 미화 약 4.5억불
- 사업 추진 구조

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80일

3. 과업내용

본 사업은 카메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업수행자는 적절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면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,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입찰자문 경험이 있는 용역사와 협업해야 함.

## 1) 시장조사

### □ 국가 사업환경 및 현황 조사

- 카메룬 전력상황 및 일반현황 조사
- 현지 기술인력 현황, 임금수준, 임금 상승률
- 자연환경, 사회/경제/문화/환경 조사 등  
(화산활동, 지진, 태풍 등 환경 사항 포함)

### □ 카메룬 전력시장 분석

- 시장 및 제도/관련법 전반 분석
- 전력계통(발전,송전) 현황 및 계획 발전소 검토
- 전력 수요, 공급 및 전력요금(Tariff, 소매단가) 분석 등
- 카메룬 및 인근국 주기기 적용 사례 검토
- 카메룬 및 인근국 발전사업 시공 및 정비 경험 업체 검토
- 카메룬내 추진 계획인 기타 발전 IPP사업 검토(위치, 발전원, 단가 등)
- 국내기업/외국기업 발전사업 진출 사례 분석(사하라 이남지역)
- 주요 IPP 사업개발사(Developer) 조사(사하라 이남지역)

### □ 연료 시장분석(천연가스 및 오일)

- 카메룬 연료가격 동향 및 기 추진사업 연료조달 방법검토
- 아프리카 연료시장 현황 및 최적 연료 공급 방안 도출  
(카메룬 주변국 가스 공급망 및 공급 가격)
- 유사 프로젝트 연료조달가격 및 계약구조 동향
- 지역 내 유사사업 연료 운송방법 및 비용 분석
- 카메룬 및 인근 국가 가스/오일 Field 개발계획 및 현황 분석  
- 본 사업 연료공급사인 SNH의 자원 개발 계획 및 현황 포함

## 2) 법률 검토

### □ 사업대상국의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

-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검토
-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검토  
(환전, 송금, 국외계좌 설립 및 사업운영 관련)
- 사업부지 확보 및 사용에 관한 법률
  - 외국인 토지사용권 취득 절차, 조건 검토 등
- 노동환경 등 국가 및 지자체 법적, 제도적 사항

### □ 발전사업 수행 관한 법률 검토

-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법률 및 각종 인허가 검토
  - 인허가 절차 검토 및 인허가 계획 수립
- 발전소 건설,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에 관한 법률, 인허가 검토
- 관련 법령(전기사업법, 가스사업법, 환경영향평가법 등)
  - 카메룬 환경관련 법령, 조건 검토(World bank 기준과 비교 포함)
- 송전망 건설 관련 법적 조건 검토
- 사업개발/운영, EPC, O&M 수행을 위한 면허 조건 및 취득 절차 검토
- 화력발전사업 관련 법령, 가이드라인 등 법적 사항 검토
- 전력판매에 대한 법령 및 계약 검토
  - 카메룬 내의 선행 IPP사업의 PPA, 정부보증관련 주요 계약 조건 (Heads of Terms) 제시 및 검토
- 유사사업 계약 사례경험을 바탕으로 Risk 검토  
(연료공급, EPC, O&M 계약, PPA, 송전계약 등)
  - 인근 국가의 국제 금융 조달을 활용한 IPP사업과 카메룬의 선행 IPP 사업 PPA와의 Risk Allocation 분석

## 3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본 사업은 향후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주 컨소시엄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(최적화) 수주에 중요한 요소임. 아래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수행을 위하여 카메룬 및 사하라 이남지역에 경험이 있는 국제 기술용역사가 과업에 참여하여 원활한 기술 분석 업무 수행이 요구됨

※ 기술 과업중 “발전소 개념설계(Concept Design)” 은 반드시 국제 기술용역사가 수행하도록 요구됨

□ 기술검토(사업대상국 전력분야 기술규정 검토 및 설계 기준 기반)

- 사업주 컨소시엄의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
  - Site 후보지 검토(우선후보지 2 Site 대상)
  - 송전 및 환경 관련 자료 검토
  
- 프로젝트 개념설계(Concept Design)
  - Site 후보지 여건 조사(사전조사, 현장조사 포함)
  - 주요설비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주기기, 보조기기, 계통, 연료 및 이송 계통, 터빈 및 복·급수 계통, 환경설비계통, 순환수 계통, 기기냉각수 등 주요계통의 개념설계
  - 주기기 공급사별, 타입별 분석 및 최적 주기기 선정 (연조 조건 및 효율 등 기술조건 고려)
  - 주요기기 배치계획 제시
- 송전계통 접속방안 및 용수공급 방안 검토
- Duel Fuel 및 보조연료 사용을 고려한 연료저장 및 이송방안 검토
- 재무용역(재무모델)에 필요한 주요 기술 조건 및 비용 제시
  - 기술, 비용 Data 등(용수비, 전력비, Heat rate, 소내소비동력 등)
  - 사업주 비용 확정 전 총사업비, EPC, O&M, LTSA 비용 등
- 사하라 이남지역 복합발전설비 검토
  - 주기기 타입, 효율, 용수공급 방안, 냉각타입 등
  - 주기기 관련 주요 공급사 진출 현황 검토
- 건설단계 주기기 및 보조설비 공급방법 검토(해상 및 육상 이송)
- 정비계획(경상정비계획, 계획정비일정, Spare Parts 공급계획) 등을 고려한 최적의 O&M Model 제시(LTSA 및 Availability model 등)

□ 향후 사업주 컨소시엄의 공사비 및 운영비 산출 위한 기술안내서 작성

- EPC 상세 설계/견적 및 O&M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수립
  - EPC/O&M 설계, 가격도출 위한 MFS 작성(국제 및 현지 규정 고려) (Minimum Functional Specification)
  - EPC 및 O&M 가격도출 위한 기술 지원

#### 4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##### □ 재원조달 계획 및 투자구조 검토

- 현지 재원조달방안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
- 유사 선행 프로젝트 사례 검토
  - 총 투자비, 재원조달구조 / 조건 검토 및 분석
- 현지 발전분야 PF 시장 검토 및 조사
  - 금리, 최적의 D/E ratio 및 차입기간 등
- 최적의 금융구조 도출 및 제안
- 사업 Risk Analysis 및 Hedge 방안 도출
  - 공사/사업 보험 필요성 및 비용 검토
  - 투자 회수 전략 수립 검토 및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방안 분석
  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- Preliminary IM/Project Teaser 작성(영문) 및 현지/국내 DFI/ECA, 상업은행 Initial Market Sounding 수행 통한 금융 조건 초기 검토
  -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위하여 MDB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바, 기초 의향 파악 및 참여 조건 협의

##### □ 재무모델 작성(영문)

-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모델 작성
  - 사업의 주요 가정 사항 및 현지 세법을 고려한 재무모델
  -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 및 업데이트
  - 수익성지표 분석(IRR, ROI, Equity IRR, NPV 등)
- 참여 주주별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 산정
- 안정성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 분석
-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(개발비, 공사비, 운영비, 연료비 등)
- 금융 관련 각종 비용 및 수수료 개략 산정 및 반영
- 기본 가정 사항(사업주 제시 등)에 대한 적정성 검토
  - ※ 과업수행자는 재무모델 작성 과정 및 작성 완료 후 우리 공사 및 사업주의 검토를 위해 Excel File 제공해야하며, 해당 자료는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변경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파일이어야 하며 해당 자료 및 Macro 등의 수정이 가능한 버전으로 제출 한다.

□ 최적 전력요금(Tariff) 도출 지원

- 카메룬 및 아프리카 유사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Target Pricing (Tariff, EPC, O&M Cost) 제시
- Tariff 최적화 전략방안 제시

5) 세무 검토

□ 세법 분석

- 법인세, 감가상각, 부가세, 원천징수, 이월결손금, 연결납세, 인지세,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, 사회보장세, 부동산세, 인지세 세제 등
- 공사 및 전기 판매 관련 매입/매출 부가세 및 면세사항
- 수익금 및 사업매각 시 매각대금에 관한 세금, 송금 및 태환 관련사항 분석
- 지사/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세금

□ 최적 투자구조 검토

- SPC 구조 및 설립 절차 검토(최적의 자본구조 검토 및 제안)
  - Offshore SPC 및 Holding Company 설립 가능성 효과 검토 포함
- 법인 종류 및 직접/간접 투자에 따른 장단점 검토/제안
- 사업권 매입/매각 관련 세금 및 세법 검토방안 및 세무회계적 Risk 검토
- 투자혜택 및 절세 방안 검토
- 기타 조세 혜택 방안

6) “사업주 수행과업”

- 위 1) ~ 5) 분야에서 수행되는 과업과 연계하여 사업주는 아래에 대한 업무를 향후 수행할 계획임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원활한 협업을 진행하고 “사업주 수행과업”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“사업주 수행과업”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

- “사업주 수행과업” 내용
  - 원활한 시장 분석을 위한 현지 정보 및 Network 지원  
(인근 국가 사업주 지사 활용)
  - 원활한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술 인력 지원 및 협업  
(EPC 및 O&M 관련)
  - 재원조달 및 최적의 금융조건 도출을 위한 전문인력 협업 및 국내 금융기관 협의(한국 ECA 기관 등)
  - 사업비, 공사비, 운영비 내역 및 EPC 기술사항 검토
    - 최적 효율을 위한 주기기/보조기기 검토 및 용역사 협업
    - 내부 기술 자료 활용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현지 공사 단가 검토
    - 기자재 운송여건 검토 및 운송 계획 검토
    - 시공 계획 수립 및 공정 검토
  - 운영비 내역 및 운영계획 적정성 검토
    - 운영조직 구성, 인건비, 전력비 등 현지 비용 수준 검토 및 협업
    - 사전 시장 조사 및 현지 조사 수행
    - 운영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검토
    - O&M 기술 검토 및 운영비 적정성 검토 및 도출
    - 발전소 운영 계획 검토 및 수립

#### 4. 과업의 일반원칙

##### 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## 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## 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## 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#### 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
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#### 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## 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## 5. 과업수행 방법

### 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### 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#### 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### 6. 과업성과품 제출

#### 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#### 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중간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모두 작성

#### 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-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최종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모두 작성

#### 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# 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

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II. 예정공정표

항목		30일	60일	90일	120일	150일	180일	비고
1. 시장	국가환경조사 및 전력시장 분석							
	연료시장 분석							
2. 법률	법률 및 제도 검토							
	사업관련 계약검토							
3. 기술	기술검토 (개념설계 등)							
	기술안내서 작성							
4. 재무	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구조 검토							
	재무모델 작성							
5. 세무	국가 세법 분석							
	투자구조 검토 등							
6. 성과품 작성								
보고회		착수 보고			중간 보고		최종 보고	
과업 진도 율	당기	10	20	15	20	20	15	
	누적	10	30	45	65	85	100	